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50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서삼석·강득구·신영대

이병진 • 채현일 • 이원택

김동아 • 박수현 • 신정훈

문금주 • 박용갑 • 김원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 ·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 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함)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항행이나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실되는 일이 잦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박소유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2022. 12. 27.)된 점을 고려할 때 어선에비치하는 검사증서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원활한 검사증서의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임시항행검사증서 및 다음 각호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어선검사증서
- 2. 어선특별검사증서
- 3. 임시항행검사증서
- 4. 건조검사증서
- 5. 예비검사증서
- 6. 별도건조검사증서
- 7. 검정증서
- 8. 건조(제조·정비)확인증
-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	
사증서 또는 <u>임시항행검사증서</u>	임시항행검사증서
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및 다음 각 호의 전자적 형태
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u>의 증서</u>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	
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또	
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어선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u><신 설></u>	<u>1. 어선검사증서</u>
	2. 어선특별검사증서
	3. 임시항행검사증서
	4. 건조검사증서
	5. 예비검사증서
	6. 별도건조검사증서
	<u>7. 검정증서</u>

8. 건조(제조・정비)확인증
9.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